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705
------	------

2021. 9. 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9. 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 제안이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8.28.)하였음.

나.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 회계연도부터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나. 사 무 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홍릉 일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인 혁신클러스터 수요 증가로 ‘기술-창업-성장’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집약적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사업비 지원이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개발 지원,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법인설립 : 2005. 9. (유형: 준정부기관)
- 조 직 : 11본부, 1부, 32팀 / 정원 173명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총 소요예산 : 5년간 4,000,000천원(연 평균 8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의 20% 이상 매칭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출연금	4,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고시(2020. 8.28)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집적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특구”)를 지정함(2020. 8. 28)²⁾.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홍릉특구는 과기부(특구진흥재단)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기술핵심기관³⁾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⁴⁾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역 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홍릉특구를 포함한 6곳(울주, 구미, 군산, 나주, 천안·아산)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

3) 기술핵심기관 : 공공연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타기관 4개 유형임.

4) 배후공간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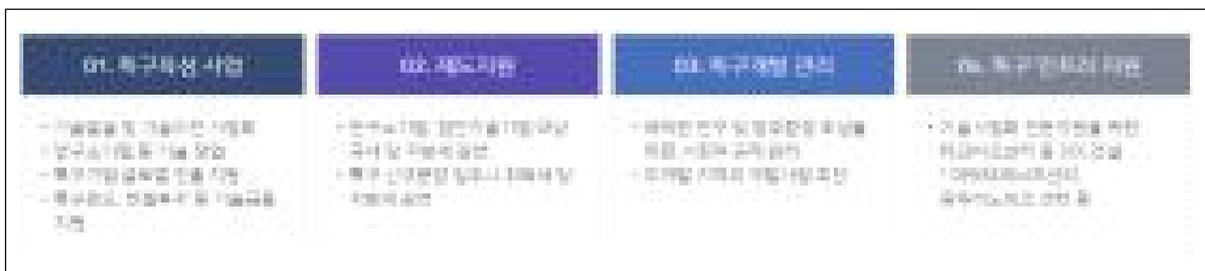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 특화분야 : 디지털 헬스케어
- 기술핵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희대, 고려대
- 배후공간 : 서울바이오허브, BT-IT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 면 적 : 1.36km²(기술핵심기관 1.30km², 배후공간 0.06km²)
- 2021년 홍릉특구 육성사업비 : 72억원(국비 60, 시비(추경) 12)
- 사업구조



- 이 중 ‘특구진흥재단’은 2005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이후 2018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요 업무 >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함.

- 조직은 11본부, 1부, 32팀(임원 1명, 직원 172명)으로 구성되며, 강소특구지원본부가 홍콩특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조직현황 >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⁵⁾에서는 특구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용에 대해 정부와

5)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이하 “강소특구사업”)은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강소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⁶⁾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바 있음⁷⁾.

- 지난 시의회 정례회(제301회)에서 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가결됐으며, 2022년 출연금으로 국비(40억원)의 20%인 8억원을 편성해 홍릉특구 육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홍릉특구 육성사업은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업별 기술개선, 제품개발, 임상시험과 인·허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됨.

- 특구진흥재단은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분야의 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와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임.

6) 연구개발특구육성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

7) 출연금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절차로 의회에 출연동의안 제출이 의무화됨.

- 이처럼 과기부와의 협약과 조례에 따라, 국비 대비 20%의 사업재원 분담을 위한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함.
- 다만, 홍릉특구에 특화된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특구진흥재단 간에 효율적인 협업과 관리 운영 방안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705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8.28.)하였음.
- 나.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 회계연도부터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나. 사무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홍릉 일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인 혁신클러스터 수요 증가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집약적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사업비 지원이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개발 지원,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법인설립 : 2005. 9. (유형: 준정부기관)
- 조 직 : 11본부, 1부, 32팀 / 정원 173명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총 소요예산 : 5년간 4,000,000천원(연 평균 8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의 20% 이상 매칭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출 연 금	4,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바이오AI산업과 특구기획팀 강호범 (☎ 2133-8742)